

무배당 동부 개인퇴직계좌 자산관리

보험약관

(기업형)



무배당 동부 개인퇴직계좌 자산관리보험 약관 (기업형)

제1조(목적)

이 약관의 목적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26조에 의해 근로자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퇴직계좌(이하 "개인퇴직계좌"라 합니다)를 설정한 경우 근로자와 퇴직연금사업자인 동부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법 제16조에서 정한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함에 있어 세부사항을 정함에 있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자"라 함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합니다)에서 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합니다)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이하 "근로자 대표"라 합니다.)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 전원이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는 경우의 해당 근로자로 합니다.
 2. "운용관리기관"이라 함은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계약자와 법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3. "자산관리기관"이라 함은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계약자와 법 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4. "급여"라 함은 가입자가 사업에서 퇴직시에 지급받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합니다.
 5. "수급권 확인"이라 함은 가입자가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에 수급자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및 퇴직연금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3조 (보험계약자 및 보험대상자(피보험자))

이 계약의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 및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가입자로 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의 지정)

- ① 이 계약의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로 합니다. 그러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한 때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계속근로기간(또는 개인퇴직계좌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사용자를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로 할 수 있습니다. 단,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납입한 추가부담금에 해당하는 적립금의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보험대상자(피보험자) 사망 시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상속인)로 합니다.

제5조 (운용관리기관의 수행업무)

① 다음 각 호의 통지 또는 지시(이하 "통지"라 합니다)는 관련 법규 및 계약자와 운용관리 기관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운용관리기관의 업무에 속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자가 회사에 대해 통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운용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여야 합니다.

1. 부담금의 통지
 2. 계약자의 적립금 운용방법에 대한 운용지시
 3. 연금 또는 일시금의 지급지시
 4. 세금 등 기타비용에 관한 사항의 통지
 5. 이전에 따른 계약자의 적립금 이전지시
 6. 적립금의 반환통지
 7. 기타 개인퇴직계좌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에서의 운용관리기관의 통지가 회사에게 계약목적상 부적절 혹은 법령 등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그 통지 등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통지 등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6조(자산관리기관의 수행업무)

① 회사는 자산관리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1. 계좌의 설정 및 관리
 2. 부담금의 수령
 3.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4. 운용관리기관이 전달하는 적립금의 운용지시의 이행
 5. 급여 등의 지급
 6. 기타 개인퇴직계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자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7조 (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계약이 성립된 경우 지체없이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8조 (보험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 및 청약서 사본을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거래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약관 및 청약서 사본을 전자문서로 송신하고 계약자가 당해 문서를 수신하였을 때에는 약관 및 청약서 사본을 드린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제9조 (계약의 해지 및 이전)

① 이 계약의 계약기간 중 개인퇴직계좌의 폐지 · 중단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을 다른 자산관리기관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양도 및 담보의 제공)

이 계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 개인퇴직계좌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를 통해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무주택자인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의 요양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천재·사변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제11조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제10조(양도 및 담보의 제공)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운용관리기관의 통지를 통해 중도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부담금의 종류)

이 계약에서 부담금은 운용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회사에 통지한 금액으로 합니다.

1. 기본부담금은 개인퇴직계좌의 퇴직연금사업자선정 등에 관한 근로자대표의 동의 확인서류(이하 “퇴직연금사업자선정서류”라 합니다)에 의해 산정 또는 결정된 법 제26조 제2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입자의 운용지시에 의하여 납입하는 부담금을 말합니다.
2. 추가부담금은 기본부담금 이외에 가입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부담금액 중 가입자의 운용지시에 의하여 납입하는 부담금을 말합니다.
3. 일시전환부담금은 사용자가 가입하고 있는 퇴직보험 등 또는 다른 자산관리계약으로부터 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전되어 납입되는 부담금을 말합니다.

제13조 (부담금의 납입)

-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부담금을 받은 때로부터 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② 계약자 또는 사용자가 제2회 이후의 부담금을 납입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 또는 사용자에게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 ③ 실적배당형의 경우 납입된 부담금은 운용관리기관으로부터 계약자의 운용지시를 회사가 접수한 날부터 2영업일의 기준가를 적용하여 펀드에 투입되며, 투입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해서는 금리연동형 공시이율로 적립하여 드립니다.

제14조 (특별계정의 설정 및 운용)

회사는 금리연동형, 이율보증형 및 실적배당형 펀드 유형별로 특별계정을 설정하며, 이 계약의 부담금 및 적립금은 회사가 정한 방법에 기초하여 운용합니다.

제15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16조 (소멸시효)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급여 청구권, 부담금 또는 해약환급금 반환청구권 등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17조 (해지시 구비서류)

제9조(계약의 해지 및 이전)에 의한 해지시에는 “해지 청구서(회사양식)”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8조~제19조는 금리연동형에 관한 사항으로 금리연동형을 선택한 경우
에만 적용됩니다.**

제18조 (금리연동형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 ① 금리연동형의 적립금에 대한 적립이율은 매월 회사가 정한 금리연동형공시이율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금리연동형공시이율은 회사의 금리연동형 특별계정 운용자산이익률, 지표금리, 향후 예상 수익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금리연동형공시이율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제19조 (금리연동형의 급여 또는 해약환급금의 지급)

- ① 회사는 급여 또는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급여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다른 자산관리기관 이전으로 인한 해약환급금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회사에 대하여 직접 급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운용관리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고,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급여를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의 급여 또는 해약환급금의 지급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급여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해약환급금은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산출합니다.
- ④ 회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급여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지급지연을 계약자 및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통보하고 그 지급기일까지 계산된 금액에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리연동형공시이율+1%로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⑤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다른 자산관리기관으로 이전하는 경우 제3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조기이전수수료가 차감된 금액입니다.

**제20조~제22조는 이율보증형에 관한 사항으로 이율보증형을 선택한 경우
에만 적용됩니다.**

제20조 (이율보증형의 단위보험)

- ① 이 계약에서 “단위보험”이라 함은 회사가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운용지시에 의하여 납입되는 부담금별로 설정되는 것으로 하며, 각 단위보험마다 설정된 보증기간을 “이율보증기간”이라 합니다.
- ②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부담금 납입시 이율보증형 공시이율의 보증기간 중 각 단위보험에 적용될 이율보증형 공시이율의 보증기간을 설정하며, 각 단위보험을 설정한 날이 속하는 달에 회사가 공시한 이율보증형 공시이율로 이율보증기간 동안 이 계약의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립금을 계산합니다.
- ③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이율보증기간 만기시점의 해당 단위보험 적립금으로 새로운 단위보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합니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이율보증기간 만기일까지 새로운 단위보험의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회사는 단위보험 만기일에 직전 단위보험과 이율보증기간이 동일한 새로운 단위보험으로 자동 설정하는 것으로 하며, 이 경우 새로운 단위보험에 적용될 공시이율은 만기시점의 회사에서 공시한 새로운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에 해당하는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 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단위보험은 이율보증기간 만기일에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나이가 사업에서 정한 정년퇴직에 의한 급여가 발생하는 나이(이하 “정년나이”라 합니다)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정이 가능하며, 이 경우 제4항에 의한 단위보험 자동 설정시에는 새로운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 만기일의 나이가 정년나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율보증기간이 가장 긴 단위보험으로 자동 설정 합니다. 단,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 만기일에 정년나이까지의 기간이 최단기 이율보증기간보다 작을 경우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금리연동형으로 보험세목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제21조 (이율보증형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 ① 이율보증형의 적립금에 대한 적립이율은 매월 회사가 정한 이율보증형 공시이율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이율보증형 공시이율은 지표금리,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이율보증형 공시이율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제22조 (이율보증형의 급여 또는 해약환급금의 지급)

- ① 회사는 급여 또는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급여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다른 자산관리기관 이전으로 인한 해약환급금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회사에 대하여 직접 급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운용

관리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고,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급여를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의 급여 또는 해약환급금의 지급통지를 받은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급여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해약환급금은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산출합니다.

④ 회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급여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지급지연을 계약자 및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통보하고 그 지급기일까지 계산된 금액에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율보증형 공시이율+1%로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⑤ 제3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단위보험 설정일부터 해당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해지되는 경우 시장가격조정률(별표1 참고)이 적용된 금액이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다른 자산관리기관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기이전수수료가 차감된 금액입니다.

제23조~제32조는 실적배당형에 관한 사항으로 실적배당형을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제23조 (실적배당형의 급여 또는 해약환급금의 지급)

① 회사는 급여 또는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급여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다른 자산관리기관 이전으로 인한 해약환급금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회사에 대하여 직접 급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운용관리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고,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급여를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의 급여 또는 해약환급금의 지급통지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의 기준가를 반영하여 5영업일 이내에 급여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해약환급금은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산출합니다.

④ 회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급여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지급지연을 계약자 및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통보하고 그 지급기일까지 계산된 금액에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리연동형 공시이율+1%로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⑤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다른 자산관리기관으로 이전하는 경우 제3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조기이전수수료가 차감된 금액입니다.

제24조 (실적배당형 펀드의 운용 및 평가)

① 실적배당형의 펀드는 특별계정별로 독립적으로 운용되며, 자산운용실적이 적립금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매일 평가합니다.

② 제1항의 특별계정에서 관리되는 자산의 운용실적이 의한 이익 및 손실은 다른 계정의 자산운용에 따른 이익 및 손실에 관계없이 해당 특별계정별로 귀속됩니다.

③ 계약자는 제27조(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의 규정에 따라 제26조(실적배당형 펀드의 유형)의 규정에 의한 펀드를 변경할 수 있으나, 각 펀드의 자산운용방법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④ 회사는 이 계약의 운용자산을 회사가 운영하는 다른 유사한 성격의 운용자산별로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펀드 통합사유, 통합일자, 기타 펀드통합관련사항을 일간신문(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동법 제2조 제2호 제‘가’항 또는 제‘나’항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에 공고하거나 계약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펀드를 통합한 날 이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각 펀드의 결산서류를 회사 본점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제25조 (실적배당형 적립금에 대한 계산)

- ① 실적배당형 적립금의 계산은 적립금과 부담금에 대하여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을 반영하여 이 계약의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회사는 특별계정 적립금에서 매일 수수료(자산관리수수료, 상품관리수수료, 특별계정운용보수, 특별계정수탁보수)를 차감합니다.

제26조 (실적배당형 펀드의 유형)

① 펀드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체적인 펀드 유형 및 내용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1. 채권형 : 국내투자적격채권[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및 자산유동 화증권을 포함], 채권관련파생상품에 펀드순자산(NAV)의 90%이상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 단 채권관련 파생상품에 대한 위험평가액이 펀드순자산의 10%이내에서 운영한다.
 2. 혼합형 : 주식(코스닥 주식 포함), 주식관련파생상품 및 주식형 수익증권 등에 펀드 순자산의 40%이내에서 투자하고, 국내투자적격채권[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및 자산유동화증권을 포함], 채권관련파생상품과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등에 60%이상 투자하는 펀드. 단 주식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에 대한 위험평가액이 펀드순자산의 10%이내에서 운영한다.
- ② 제1항에서 회사가 운용자산인 유가증권 등의 가격변동 및 해약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를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27조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

- ①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계약 체결시 운용관리기관에서 제시한 제26조(실적배당형 펀드의 유형)에 정한 펀드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복수로 선택한 경우 펀드별 편입비율을 설정해야 합니다.
- ② 부담금은 제1항에서 설정한 펀드별 편입비율에 따라 분산 투입됩니다.
- ③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회사에 서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사이버 창구로 펀드의 일부 또는 전부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펀드별 편입비율도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변경됩니다.
- ④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제3항에 의한 펀드의 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32조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폐지)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경요구일+제5영업일” 이내에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에 따릅니다.

⑤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한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펀드 변경요구는 펀드자동재배분 실행 예정일 직전 제5영업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⑥ 회사는 천재.지변, 유가증권시장의 폐쇄 . 휴장 . 유가증권 등의 매각지연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4항에서 정하는 날까지 제4항에서 정하는 날까지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 및 향후 이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험재산이 처분되는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에 따릅니다.

제28조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펀드자동재배분 선택)

①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계약체결시 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펀드자동재분배 지정일부터 매 6개월 단위로 펀드자동재분배 지정시 선택한 펀드의 편입비율로 자동 재배분됩니다.

② 보험기간 중 운용관리기관을 통한 펀드변경에 따라 펀드의 편입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펀드 편입비율에 따라 자동 재배분되며, 이 경우에도 펀드자동재분배 지정일부터 매 6개월 단위로 재배분됩니다.

③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 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④ 펀드자동재배분은 펀드자동재분배 지정일부터 매 6개월 단위로 실행되며, 실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에 실행됩니다.

제29조 (실적배당형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 방법 및 운용)

① 특별계정의 자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법에 의해서 평가하며, 시가법은 각 특별계정별로 적용됩니다.

② 특별계정의 유가증권 평가방법 및 운용은 보험업법, 보험업감독규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감독규정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제30조 (특별계정의 좌수 및 기준가격)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합니다.

1. 좌수

특별계정 설정시 1원을 1좌로 하며, 그 이후에는 매일 좌당 기준가격에 따라 좌단위로 특별계정에 이체 또는 인출합니다.

2. 좌당 기준가격

특별계정의 좌당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하고, 최초 판매개시일의 기준가격은 1,000좌당 1,000원으로 합니다.

$$\text{좌당 기준가격} = \frac{\text{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text{특별계정 총 좌수}}$$

단, 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라 함은 당일 특별계정의 총 자산에서 수수료(자산관리수수료, 상품관리수수료, 특별계정운용보수, 특별계정수탁보수)를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

다.

제31조 (특별계정의 제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회사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86조 제2항에 의한 제비용 및 보수, 동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한 회계감사비용, 제100조 제5항에 의한 자산운용보고서 작성·제공비용 및 제149조에 의한 투자증권 평가비용 등을 특별계정자산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제32조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폐지)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계정을 폐지할 수 있습니다.
 1. 당해 각 특별계정의 자산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자산가치의 변화로 인하여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해진 경우
 2. 1개월간 계속하여 펀드의 순자산가치가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3. 당해 각 특별계정의 운용대상이 소멸할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
- ②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사유로 각 특별계정을 폐지할 경우에는 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폐지사유, 폐지일까지의 적립금과 함께 제27조(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에 따른 펀드 변경 선택에 관한 안내문 등을 작성하여 통보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펀드변경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유사한 펀드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유로 계약자가 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펀드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연간 펀드 변경 회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합니다.

제33조 (퇴직소득세 등의 원천징수 의무)

급여의 지급에 따른 퇴직소득세 등의 원천징수 의무는 관련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34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5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협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6조 (약관의 해석)

-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제37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 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제작의 보험안내

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38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39조 (준거법)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제40조 (약관의 변경)

이 약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 이후 변경된 약관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자에게 변경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제41조 (개인형 개인퇴직계좌으로의 전환)

계약자가 급여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아니하고, 법 제25조에 의한 개인퇴직계좌(이하 “개인형개인퇴직계좌”라 합니다)를 설정하는 경우, 이 계약은 개인형개인퇴직계좌로 전환되어 개인형개인퇴직계좌의 계약내용을 적용받습니다.

[별표1]

시장가격조정률

1. 이율보증기간 중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의 시장가격조정률(MVA) 적용

단위보험 설정일부터 해당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해지되는 경우 적립금에 (1-시장가격조정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합니다.

2. 시장가격조정률(MVA)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MVA = \max \left[1 - \left(\frac{1+i_j}{1+i_h} \right)^{n+\frac{m}{12}}, 0 \right]$$

i_j : j 번째 설정된 단위보험에 적용되는 공시이율

n : 잔여보증기간의 연단위기간

m : 잔여보증기간의 연미만 월단위기간(월 미만 절상)

i_h : 잔여보증기간에 해당하는 공시이율(소수점 4째 자리에서 반올림)

$$i_h = i_{h-1} + (i_{h+1} - i_{h-1}) \times \frac{m'}{12 \times n'}$$

i_{h-1} : 해지일이 속한 달에 회사에서 공시한 잔여보증기간보다 작거나 같은 공시이율별 보증기간 중 가장 가까운 이율보증기간에 해당하는 공시이율. 단, 잔여보증기간이 공시되는 이율보증기간중 최단기 이율보증기간보다 작은 경우 i_{h-1} 은 “ i_{h+1} ”로 하며 i_{h-1} 의 이율보증기간은 “ i_{h+1} 의 이율보증기간”으로 한다.

i_{h+1} : 해지일이 속한 달에 회사에서 공시한 잔여보증기간보다 크거나 같은 공시이율별 보증기간 중 가장 가까운 이율보증기간에 해당하는 공시이율

n' : i_{h-1} 보증기간부터 i_{h+1} 보증기간까지의 연단위기간

m' : i_{h-1} 보증기간부터 잔여보증기간까지의 월단위기간(월 미만 절상)

$i_j > i_h$ 인 경우 또는 급여의 지급인 경우에는 $MVA=0$

3. 해지되는 시점에 단위보험의 잔여보증기간에 해당하는 공시이율이 해당 단위보험 설정시의 공시이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이 시장가격조정률(MVA)을 적용받아 적립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4. 시장가격조정률(MVA)이 5% 이상인 경우는 5%를 최고한도로 하여 계산합니다.